

결의안 # 19-95

체납자에 대한 수도 단수 조치 방침과 관련된 결의안 # 18-73 을 개정하는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LA VERNE 시의회 결의안

• 시의회는 2018 년 12 월 3 일에 결의안 # 18-73 을 승인하여 현재의 수도 요금과 방침을 세웠다.

• 2018 년 9 월 28 일에 주지사 브라운(Brown)은 상원 법안 998 (SB 998)에 서명을 했고, 이를 통해 요금 납부 불능으로 인해 수도를 사용할 수 없는 캘리포니아 주민의 수를 최소화하였다.

• SB 998 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은 수도법(Water Code) 섹션 106.3 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을 안전하게, 용이하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SB 998 은 체납으로 인해 주민에게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추가 절차 보호 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SB 998 은 200 개 이상의 급수(service connections)에 대해 물을 제공하는 모든 공공 기관 또는 민간의 도시 및 커뮤니티 상수도 시설은 새로운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SB 998 은 매년 3,000 명을 초과하는 고객에게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 시설에 대해 2020 년 2 월 1 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LA VERNE 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섹션 1. 연체 및 체납에 대한 요금과 관련하여 결의안 18-73 의 섹션 A-20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0. 연체 및 체납에 대한 요금: 불법적인 수도 사용 또는 해당 결의안의 규정 미준수로 인해 공공 서비스 계좌가 연체 및 체납 대상이 되거나 또는 연체 및 체납으로 인해 시에서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서비스당 \$20 의 요금이 부과되고 이 금액은 해당

계좌 특별 처리 및 서비스 호출로 인해 시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 총당에 사용된다. 오후 6 시와 오후 8 시 사이의 시간에 기존 서비스가 회복되는 경우 추가 요금 \$40 이 부과되고 해당 금액은 시 직원의 초과 근무 수당을 충당하는 데 사용된다. 수도 당일 서비스를 요청하는 새로운 고객의 경우, 오전 8 시와 오후 3 시 사이에만 해당 서비스가 제공된다. 오후 3 시 이후 당일 서비스를 원할 경우 \$30 의 요금이 부과된다 (이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수도 서비스는 다음 날에 제공된다). 고객 요청에 의해 정상적인 근무 시간에 수도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섹션 2. 요금 미납과 관련하여 결의안 18-73 의 섹션 A-21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1. **요금 미납**: 고객이 공공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해당 요금이 연체되는 경우, 전체 미납 요금에 대해서 오 퍼센트(5%)의 연체료가 부과되고, 그리고 2 개월치에 해당하는 요금 또는 시행정 담당자 및 해당 담당자의 대리인이 과거 요금 기록에 근거하여 정한 \$50 의 금액을 선불로 납부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계좌가 연체될 때마다 해당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객이 요금 및 연체료 지불을 요구하는 서면 공지가 발송된 후 사십사 (44) 일 내에 미납 요금과 연체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고객이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후불 플랜(Deferred payment plan), 대안적 지불 스케줄(Alternative Payment Schedule), 고지서 항소 조사(Bill Appeal Investigation)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요청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도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해당 서비스가 물리적으로 제공되었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다음의 항목에 대해 고객의 지불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만 해당 서비스가 재개될 수 있다. 1) 연체된 모든 금액, 2) 서비스 회복 관련 요금, 3) 섹션 A-28 에 나와있는 선불 요금, 그리고 4) 기타 관련 요금. 체크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계좌의 경우, 해당 체크가 은행으로부터 반송되고 해당 금액이 인출되지 않을 경우, 이는 미납으로 간주된다. 해당 체크는 계좌 만기일 전에 현금으로 상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계좌에는 연체료가 부과된다.

고객은 다음과 같이 후불 플랜, 대안적 지불 스케줄, 또는 고지서 항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a. 후불 플랜(Deferred Payment Plan): 이것은 공식적으로 고객이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미납된 청구 금액을 이 (2) 회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해 준다. 다음의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고객은 후불 플랜을 요청할 자격을 갖는다. 1) 지난 육 (6) 개월 동안 후불 플랜을 어기지 않은 경우, 2) 지난 60 일 동안 불충분하게 지불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3) 고객이 필수 사항인 25 퍼센트 선금(다운 페이먼트)을 지불한 경우. 고객은 약정한 후불 금액뿐만 아니라 새롭게 청구된 금액을 전부 정해진 기간 안에 지불해야 한다.
- b. 대안적 지불 스케줄 (Alternative Payment Schedule): 이것은 공식적으로 고객이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미납된 청구 금액을 12 개월 (6 개 고지서) 내에 지불할 수 있게 해 준다. 다음의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고객은 대안적 지불 스케줄을 요청할 자격을 갖는다. 1) 지난 십이 (12) 개월 내에 대안적 지불 스케줄을 어기지 않은 경우, 2) 지난 60 일 동안 불충분하게 지불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3) 고객이 필수 사항인 25 퍼센트 선금(다운 페이먼트)을 지불한 경우. 고객은 약정한 대안적 지불 금액뿐만 아니라 새롭게 청구된 금액을 전부 정해진 기간 안에 지불해야 한다.
- c. 고지서 항소 조사(Bill Appeal Investigation): 고객이 가장 최근 고지서가 틀렸다고 확신하는 경우, 고객은 고지서를 수령하고 십 (10) 일 내에 고지서 항소 조사를 위해 시에 서면으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정 담당자 또는 그 대리자가 조사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십 (10) 영업일 내에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수도 서비스는 중단되지 않고, 고객은 시의 결정을 공지받게 된다.
- 결의안 # 19-95
페이지 2/3
- 고객은 고지서 항소 조사 기간 동안 새롭게 청구된 금액을 전부 정해진 기간 안에 지불해야 한다.

섹션 3. 이 결의안은 2019 년 12 월 16 일 채택되고 승인된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2020 년 2 월 1 일부터 준비되는 모든 공공 서비스 고지서에 적용된다.

섹션 4. 이 조치는 '캘리포니아주 환경법(California Environmental Quality Act) 섹션 15273 - 요금 및 La Verne 시 환경 가이드라인'의 적용에서 법적으로 제외된다.

섹션 5. 이 결의안의 어떤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불법에 해당하는 경우, 시의회는 결의안의 해당 부분을 남은 다른 부분과 분리하고, 남은 다른 부분은 온전히 효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섹션 6. 시장이 서명을 하고 시 사무직원(Assistant City Clerk)이 이 결의안의 내용 및 채택을 확인하고 나면 즉시 효력이 발생되어 시행된다.

2019 년 12 월 16 일에 이것을 통과하고, 승인하고, 그리고 채택한다.

[인장]
시장 Don Kendrick

확인:

[인장]
시 사무직원 Lupe Gaeta Estrella

확인서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주
LA VERNE 시

La Verne 시 사무직원인 본인 Lupe Gaeta Estrella 는 결의한 #19-95 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2019 년 12 월 16 일에 열린 시의회 정례 회의에서 통과되고 채택되었고, 다음의 표결에 의해 통과되고 채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찬성: Davis, Hepburn, Rosales, Carder, 그리고 시장 Kendrick.

반대: 없음.

결원: 없음.

기권: 없음.

[인장]
시 사무직원 Lupe Gaeta Estrella

결의안 # 19-95

페이지 3/3